

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박병수 의원

3. 제정이유

-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안 제5조)
- 예산지원, 수거보상비 지급(안 제6조 ~ 제7조)
- 포상(안 제8조)

5.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6. 조례안 예고기간 : 2026. 9. 29. ~ 2025. 10. 6.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5,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2팀(전화: 061-550-5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불용농약,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조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 ② 영농폐기물은 군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등 농촌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수거자는 적기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

해야 한다.

③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에 관한 사항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

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